#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

## 1. 심사과정

- O 제출일자: 2023. 11. 9.
- O 제 출 자: 서구청장
- 회부일자: 2023. 11. 10.(의안번호 제505호)
- 상정일자: 제24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제1차 사회도시위원회(2023. 12. 4.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: 하경호 환경청소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○ 상위 법령인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반영하고,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을 지정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 수정(안 제1조)
- O 상위 법령인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에 맞게 정비(안 제8조, 제13조, 제15조)
- O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신설(안 제4조)
-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지정
- O 개방화장실의 지정 수정(안 제11조)
  - 「공중화장실법 시행령」 제8조제2항 삭제에 따른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, 운영방법 명확히 반영

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진호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정비하고 개정 법령에서 신설·변경된 사항 등을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반영함으로써 법적 타당성을 제고하는 한편, 부적절한 문장과 용어 및 조문 체계 등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다듬고자 하는 것으로서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3조는 공중화장실 설치·관리자의 책무에 관한 여러 사항이 한 문장으로 나열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요 내용을 각 호로 분리한바 어느 정도 간결성과 명료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이며, 안 제4조는 상위 법령에 신설된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히 규정하였다고할 수 있음. 안 제11조는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 (2022. 11. 1.)으로 삭제된 개방화장실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에 신설하고, 반면에 재수록이 불필요한 법정 사항은 삭제한 것으로 판단됨.
-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대체로 타당성 있게 수정하였고, 관련 입법 절차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보이나, 본 조례와 관련이 깊은 「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」와의 통합 여부나, 법 제15조에 따라 구청장이 둘 수 있는 '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'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한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공중화장실 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심사결과: 원안가결